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674

발의연월일: 2024. 9. 5.

발 의 자:한병도·정태호·임오경

한정애 • 윤준병 • 이훈기

정진욱 • 신정훈 • 윤건영

임호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기지역 내 중소기업이 사업 전환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를 경감하고 있음. 아울러 대도시 내 법인 및 공장이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도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고, 법인등기 및 부동산 등기의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있음.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역경제 성장요인 분석과 거점도시 중심 균형발전' 보고서에 따르면 생산성을 개선할 경우 경제성장률이 비수도권 대도시는 1.3%p 상승하는 반면 수도권은 1.1%p 상승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그럼에도 국내 30대 기업의 수도권 비중이 95.5%에 달하고 있으므로 지역균형발전뿐만 아니라 경제성장률 제고 측면에서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위기지역 내 중소기업과 대도시 내 공장 및 법인에 대한 세제

혜택 일몰기한을 현행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으로써 지방 이전의 유인을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75조의3, 제 79조 및 제80조). 법률 제 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을 각각 "2027년"으로 한다.

제7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4년"을 "2027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24년"을 "2027년"으로 한다.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4년"을 "2027년"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5조의3(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제75조의3(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등에 대한 감면) ①
호의 지역(이하 이 조에서 "위	
기지역"이라 한다)에서 제58조	
의3제4항 각 호의 업종을 경영	
하는 중소기업이 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기간 내에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	
전환을 위하여 같은 법 제8조	
에 따라 <u>2024년</u> 12월 31일까지	<u>2027년</u>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받고 사	
업전환계획 승인일부터 3년 이	
내에 그 전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	
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	
분의 50(100분의 50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을 경감하고, <u>2024년</u> 12	<u>2027년</u>
월 31일까지 사업전환계획 승	
인을 받은 중소기업이 과세기	
준일 현재 전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사업전환일 이후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 (100분의 50 범위에서 조례로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을 경감한다.

- 1. ~ 4. (생 략)
- ②·③ (생 략)

제79조(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이하 이 절에서 "대도 시"라 한다)에 본점 또는 주사 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직접 하는 법인이 해당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매각하거나 임차를 종료하고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 를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을 직접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 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재산세의 경우 그 부동산에 대 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 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면 제하며 그 다음 3년간 재산세 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

<u>.</u>
1. ~ 4.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79조(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 ①
<u>2</u>
<u>027년</u>

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한 취 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 2. (생략)

② 대도시에 등기되어 있는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그 이전에 따른법인등기 및 부동산등기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③ (생략)

제80조(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①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직접 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과밀 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서 공장 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이전한 후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재산세의 경우 그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재산

·
1. • 2. (현행과 같음)
②
202714
<u>2027년</u>
③ (현행과 같음)
제80조(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①
<u>2027년</u>

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 2. (생략)	1. • 2.
② (생 략)	② (ই

1. •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